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22 |
|----------|-----|

2023. 11. 30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30. / 남양주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남양주 슈퍼성장시대, 시민시장시대, 실용·통합시대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·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총 정원 변동사항 : 2,378명 → 2,397명(+19명)
 - 1) 집행기관 : 2,340명 → 2,359명(+19명)
-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
 - 1) 일반직 4급 : 19명 → 20명(+1명)
 - 2) 일반직 5급 : 102명 → 104명(+2명)
 - 3) 일반직 6급 이하 : 2,207명 → 2,223명(+16명)
- 인건비 비용 추계액(연간) : 약 1,016백만원

※ 1년간 인건비 소요액 기준임.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조직의 신설 및 통폐합, 기능이관 등에 따른 인력을 확보 및 재배치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서 4급 한시기구(운영시한 2027.1.1.)와 2과 증설 등에 따라 현재 정원 2,378명에서 2,397명으로 19명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별표 3 직급별 정원표에 따르면 현행 정원 본청의 4급 1명, 5급 5명을 증원하고, 사업소의 5급 1명, 읍면동 2명을 감원하는 것은, 본청에 미래도시추진단과 사업소의 평생학습원 폐지 및 도로관리,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이원화, 진접읍과 화도읍의 산업환경과 폐지 등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연동되는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